

# 학 칙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교는 초·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교는 군산제일중학교라 한다.

제3조(위치) 본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기장로 142에 둔다. <개정 2024.10.1.>

##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

제4조(수업연한) 본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한다. 단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입학자격)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초등학교 제6학년을 졸업한자
-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자
-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의 과정을 수료한자
- 초등학교장으로부터 중학교 입학 자격을 받은자 [신설 2016.5.1.]

##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

제6조(학급) 본교의 학급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설치 운영한다. <개정 2024.10.1.>

제7조(학생정원) 본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. <개정 2024.10.1.>

##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행

제8조(교육과정)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.

<개정 2024.10.1.>

② 학교 교육과정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국어, 도덕, 사회, 수학, 과학, 기술·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 및 외국어와 선택과목,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한다. <개정 2024.10.1.>

③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교재연구, 수업연구, 교직원 연구, 교내장학에 관한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
제9조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.

<개정 2024.10.1.>

다만,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0.1.>

1. 삭제 <2024.10.1.>

2. 삭제 <2024.10.1.>

3.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24.10.1.>

제10조(평가) ① 평가는 매 학기 1차고사와 2차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<개정 2024.10.1.>

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(각 교과 담임에 의한 형성평가, 수행평가 등)를 수행할 수 있다.

## 제5장 학년, 학기 및 휴업일

제11조(학년, 학기)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.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종료일까지, 제2학기는 여름방학 종료 후 개학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2조(휴업일)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 [단,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(자문)를 거쳐 정하며,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·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]

<개정 2024.10.1.>

1. 관공서의 공휴일

2. 개교기념일 9월 1일

3. 여름방학

4. 겨울방학

5. 학년말 방학

6. 주5일제 수업 시행에 의한 토요일

7. 재량휴업(단기방학) [신설 2016.5.1.]

② 학교장은 비상재해,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제2호 내지 5호의 여름·겨울 및 학기말 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.

④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는 등교시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.

##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

제13조(수료·졸업)

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교무회의의 사정에 의한다.

-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  - ③ 초·중등교육법 제2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0.1.>
- 제14조(졸업장)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.

##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

### 제15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)

-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.
-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.
- ③ 학교장으로부터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. [신설 2016.5.1.]

### 제16조(조기진급·조기졸업의 범위)

- ①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.
- ② 조기졸업이란 2학년에서 졸업함을 말한다. [신설 2016.5.1.]

### 제17조(대상자 선정)

-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(3월 말) 이내에 한다.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(4월 말) 이내에 한다.
-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③ 심신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  1.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, 사회(역사 포함), 수학, 과학,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
  2.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(IQ)가 140 이상인 자
  3. 국가기관(중앙행정부처)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,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
  -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
### 제17조 2(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) [신설 2016.5.1.]

- ① 학교장이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이어야 한다.
  1.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, 사회(역사 포함), 수학, 과학,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
  2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<개정 2024.10.1.>
  -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한다.

### 제18조(대상자 학습 방법)

- ① 자학자습에 의한 조기이수
- ②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이수
- ③ 상설 동학년 특별반 편성 운영
- ④ 지역합동 교과 특별반 설치 운영

### 제19조(이수인정 평가) 정기적인 지필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.

### 제20조(조기 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)

- ①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조기 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, 부위원장은 교무부장, 위원은 연구부장, 인성인권부장, 교과담당교사, 학급담당교사가 된다. <개정 2024.10.1.>
- ③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1.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수립
  2.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(평가 방법 및 일정 결정, 평가도구선·제작 등)
  3.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결과 조기수료 및 조기졸업 인정에 관한 사항
  4. 기타 조기 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<개정 2024.10.1.>

## 제8장 입학·전학·편입학·재입학

### 제21조(입학시기) 학생의 입학,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0.1.>

### 제22조(입학결정) 본교에서의 입학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. <개정 2024.10.1.>

### 제23조(전·편입학) ① 본교에의 전·편입학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. <개정 2024.10.1.>

- ② 학교장은 전·편입학 절차를 마친 학생에 대하여, 재학 중인 학교장이나 전 재적

교장에게 전·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0.1.>

③ 학교장은 주소의 이전 등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서류 검토 후 전학용 재학 증명서를 발급하고, 전출하는 학교장으로부터 전·편입학 서류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서류를 송부한다. <개정 2024.10.1.>

④ 본교에 전·편입학하려는 학생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.

제24조(재입학) 학교장은 본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입학を 원하는 자가 있을 때,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하되, 시기는 학교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

제25조(의무교육면제·유예·정원외 관리 중인 자의 취학)

① 의무교육을 면제·유예·정원외 관리 중인 자(본인과 보호자를 포함하여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)로서 본교에 취학(재 취학을 포함한다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제15조에 의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취학 희망학년의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취학할 학년을 결정하고 취학을 허가한다.

③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는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한 학년과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취학 학년을 고려하여 평가교과목, 평가내용,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, 이때 학교성적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취학 희망 학년을 선택하여 취학 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 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학교 측의 설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학교장에서 제출한다.

⑤ 국내외 총재학기간 합산 결과에 따라 해당학년 또는 그 이하 학년으로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로 취학가능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26조(귀국학생 등의 전·편입학)

①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정규학교에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(학생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)이나 외국인학생, 탈북자(자녀포함)가 본교에 전·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의 2%이내에서 허가한다.

② 제1항의 귀국학생 중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유학 등 불법 출국하여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, 비정규학교에서 취학한 후 귀국한 학생 등은 일반 전·편·재입학을 포함하여 학년별 정원의 3%이내에서 학교장이 전·편입학을 허가한다.

## 제9장 휴학상별 및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[제목개정 2024.10.1.]

제27조(휴학)

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.

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에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.

③ 병역으로 인하여 휴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④ 휴학한 자의 복학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익일(또는 익월)로 한다.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는 다음 학년도 학기 초 또는 일(또는 월)까지 휴학을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.

제28조(의무교육의 면제, 유예,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) <제목개정 2023.3.1.>

① 학교장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한하여,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. 다만,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
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자와 관할청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.

④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,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<신설 2023.3.1.>

⑥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(숙려 기간, 참여 횟수,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)에 대한 사항은 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」

에 따른다. [신설 2023.3.1.] <개정 2024.10.1.>

제29조(표창)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여 학업이 우수한자, 근면성이 뛰어난 자,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된 자,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30조(학생의 징계)

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학교 내의 봉사
2. 사회봉사
3. 특별교육 이수

4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[신설 2011.5.2.]

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4.10.1.>

③ 학교의장은 학생징계를 위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.

④ (삭제)

⑤ 학교장은 학생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, 위탁교육 기관에 해당학생을 위탁교육 시킬 수 있다.

⑥ 의무교육대상자는 의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퇴학처분을 내릴 수 없다.

## 제10장 기타 비용징수 [제목개정 2024.10.1.]

제31조 삭제 <2024.10.1.>

제32조(기타의 비용징수)

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24.10.1.>

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 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,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11장 학생자치활동

제33조(학생자치활동의 보장) 학교장은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34조(학생회 구성)

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 운영한다.

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 제12장 교외체험학습

제35조(수업운영)

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0.1.>

② 체험학습의 유형은 교외체험학습, 교환학습 등으로 한다. <개정 2024.10.1.>

제36조(운영 및 기간)

①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. [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'심각'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'가정학습' 포함] 이때 학생은 체험학습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3.1., 2023.3.1., 2024.10.1.>

②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로 한하며, 학생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로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4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학부모, 학생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0.1.>

③ 단체 교환학습은 도시 학교 간, 도시와 농·산·어촌 학교 간의 교류학습 계획에 따라 연 2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0.1.>

④ 삭제 <2024.10.1.>

⑤ 단체 해외교환학습의 경우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. <신설 2024.10.1.>

## 제13장 장애학생 차별금지

제37조(장애학생 차별금지)

①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,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 거부, 전학 강요, 전입 거부 등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.

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.

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·실습, 현장견학, 현장체험학습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, 배제, 거부하지 않는다. <개정 2024.10.1.>

④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.

⑤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,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.

⑥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, 추가시험(이하 "추가서류 등"이라 한다)을 요구하지 않는다. 다만,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

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## 제14장 학칙개정

제38조(학칙개정의 절차)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 개정안을 작성하여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법인에 보고 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.

② 제 ①항의 학칙을 개정하거나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제 ②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9조(시행세칙) 학교장은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규정 등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(관리 1041.3-904(75.10.14))

① 이 학칙은 197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관리 1041-272(76. 2. 4))

① 이 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관리 1041.3-243(77.3.16))

① 이 학칙은 197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관리 1041-4327(77. 12. 17))

① 이 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관리 1041.1-4255(78. 12. 8))

①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관리 1040-1324(82. 4. 9))

① 이 학칙은 198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관리 25412-382(91. 3. 15))

①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관리 81100-356(96. 2. 28))

①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관리 81412-1278(98. 7. 15))

① 이 학칙은 199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관리 81412-1315(98. 7. 20))

① 이 학칙은 199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학칙은 199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관리 81412-2975(02. 12. 26))

① 이 학칙은 200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8. 11. 관리과-6378호)

①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3. 4. 학무과-2514호)

①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4. 8. 학교현장협력과 -8347)

① 이 학칙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2.7. 교육혁신과-1356)

①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1. 28. 교육지원과-1529)

① 이 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12. 18. 민주시민교육과-18452)

①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9. 20. 학교교육과-14382, 2023. 2. 11. 민주시민교육과-2478)

①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 3. 6. 민주시민교육과-2325)

① 이 학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